

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(2차)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535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25. 12. 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이자수입 증가 및 비용자성사업비 미집행 반영 등 수입·지출 계획 변경으로 인해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2025년도 기금 조성액 (4,8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증 9,405,784천원)

(단위: 천원)

| 구분 | 2024년도 말 조성액(A) | 2025년도 조성계획 | | | 2025년도 말 조성액 (A+D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수입(B) | 지출(C) | 증감 (D=B-C) | |
| 변경(1차) | 12,929,503 | 1,622,681 | 9,700,000 | △8,077,319 | 4,852,184 |
| 변경(2차) | 12,929,503 | 1,328,465 | 0 | 1,328,465 | 14,257,968 |

나.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| 항목 | 수입금액 | 기정액 | 증감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계 | 14,257,968 | 14,552,184 | △294,216 |
| 전입금 | 800,000 | 800,000 | 0 |
| 예치금회수 | 12,929,503 | 12,929,503 | 0 |
| 이자수입 | 397,028 | 392,681 | 4,347 |
| 기타수입 (공유재산매각수입) | 131,437 | 430,000 | △298,563 |

다.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| 항 목 | 지출금액 | 기정액 | 증 감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계 | 14,257,968 | 14,552,184 | △294,216 |
| 비용자성사업비 | 0 | 9,700,000 | △9,700,000 |
| 예치금 | 14,257,968 | 4,852,184 | 9,405,784 |

라. 2025년도 말 조성액 증가 (4,8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증 9,405,784천원)

- 미집행 비용자성 사업비 정기예금 예치, 이자수입 등 연말 조성액 증가

마. 2025년도 수입계획(14,5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감 294,216천원)

- 이자수입 증가 (392,681천원 → 397,028천원, 증 4,347천원)
 - 매각대금 및 전입금을 정기예금 예치, 이자수입 증가 등
-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(430,000천원 → 131,437천원, 감 298,563천원)
 - 공유 재산 매각수입 감소분 반영 ※ 매각물량 감소

바.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 (14,5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감 294,216천원)

- 비용자성사업비 미집행 반영 (9,700,000천원 미집행, 감 9,700,000천원)
 - 청사 증축 설계용역 추진중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을 위한 사면검토 용역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 및 착공일정 순연으로 청사 증축 건축비 미집행
- 예치금 증액 반영 (4,852,184천원 → 14,257,968천원, 증 9,405,784천원)
 - 청사 증축 건축비 미집행액은 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예치

3. 근거 법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

나. 「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4. 붙임 : 2025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(2차)안

참고자료 관련법규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□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1.3.14><개정 2011.12.26><개정 2014.12.29>

제2조(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)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11.3.14><개정 2011.12.26>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1. 일반회계 전출금
2. 국, 공유재산 매각 대금
3. 지방채 발행
4. 울산광역시 보조금
5.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
6. 그 밖의 수익금<개정 2014.12.29>

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개정 2022.10.4.>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청사 부지 매입비
2. 신청사 건축비
3.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<개정 2014.12.29>
4.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<신설 2011.12.26.>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개정 2014.12.29>

② 기금은 구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.

제5조(기금의 이익 및 결손 처리)<개정 2022.10.4.>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.<개정 2022.10.4.>

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②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.<개정 2016.12.30><개정 2022.10.4.>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22.10.4.>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<개정 2016.12.30><개정 2022.10.4.>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<개정 2016.12.30>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개정 2016.12.30>
4. <개정 2014.12.29><삭제 2016.12.30>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제9조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야 하고, 분석결과를

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2.10.4.>
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.

1. 기금운용관: 청사관리 담당국장<개정 2022.10.4.>
2. 기금출납원: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<개정 2022.10.4.>

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.><개정 2022.10.4.>

제11조(관계 규정의 준용)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4.12.29.><개정 2022.10.4.>